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1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 박용갑·소병훈·권칠승

박상혁 • 이기헌 • 강유정

유준병 • 장철민 • 김영호

문대림 • 조계원 • 김종민

복기왕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.

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,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,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~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,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.

반면 미국 연방항공청(FAA)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,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(AIP)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,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,905건에서 2019년 1만 7,228건으로 약 1.7배 증가했으나,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.0%에서 2019년 4.1%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.

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,600건이 발생하고,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,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(BIRDS)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영국 히스로공항,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,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・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,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,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7호 중 "전파를"을 "전파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"로, "항공기의 항행을"을 "조류 충돌 방지 등 항공기의 항행을"로 한다.

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항공등화, 항행안전무선시설(조류 탐지레이더,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포함한다)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(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6. (생략)

17. "항행안전무선시설"이란 전 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 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8. ~ 20. (생략)

제43조(항행안전시설의 설치) ① | 제43조(항행안전시설의 설치) ① 항행안전시설(제6조에 따른 개 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 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 다)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한다.

개 정

아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----- 전 파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------- 조류 충돌 방지 등 항 공기의 항행을 -----

18. ~ 20. (현행과 같음)

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항공 등화. 항행안전무선시설(조류 탐지 레이더,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포함한다)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 시설(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 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 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부 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)을 설 치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